

공인인증업무준칙

Ver 1.6

2013. 12

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1. 개 요	1
1.1 배경 및 목적	1
1.1.1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1
1.1.2 공인인증업무준칙	1
1.1.3 인터넷진흥원 소개	1
1.2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명칭	2
1.3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2
1.3.1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	2
1.3.2 국가정보원	2
1.3.3 미래창조과학부	3
1.3.4 인터넷진흥원	3
1.3.5 공인인증기관	5
1.3.6 신뢰당사자	7
1.4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관리	8
1.4.1 인증업무준칙 제·개정권자	8
1.4.2 개정 절차	8
1.4.3 시행 절차	9
1.5 정의 및 약어	9
2. 공인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12
2.1 공인인증서 종류	12
2.1.1 인증서 정책	12
2.1.2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및 용도	12
2.2 공인인증서비스 수수료	13
2.2.1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갱신 발급 수수료	13
2.2.2 공인인증서 접근 수수료	13
2.2.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접근 수수료	13
2.2.4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13

3.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공인인증업무	14
3.1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14
3.1.1 명칭의 사용	14
3.1.2 공인인증서 발급 정보	14
3.1.3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4
3.1.4 공인인증서 수령	15
3.2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15
3.2.1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신원확인	15
3.2.2 신규발급 절차	16
3.3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16
3.3.1 갱신발급 신청 시 신원확인	16
3.3.2 갱신발급 절차	16
3.4 공인인증서 재발급	17
3.4.1 재발급 신청 시 신원확인	17
3.4.2 재발급 절차	17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17
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폐지	17
3.6.1 효력정지·효력회복, 폐지 신청 시 신원확인	17
3.6.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18
3.6.3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18
3.6.4 공인인증서 폐지	19
3.7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21
3.8 기타 부가 서비스	21
3.9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21
3.10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프로파일	21
3.1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21

3.12 전자서명키 갱신	22
3.13 공인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22
3.14 공인인증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22
4.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23
4.1 공고설비	23
4.2 공고방법	23
4.3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정보 공고	23
5. 공인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24
5.1 물리적 보호조치	24
5.1.1 물리적 접근 통제	24
5.1.2 전원	24
5.1.3 수해 방지	24
5.1.4 화재 예방	24
5.1.5 매체 저장	25
5.1.6 폐기물 처리	25
5.1.7 원격지 백업	25
5.2 절차적 보호조치	25
5.2.1 역할별 업무 분리	25
5.2.2 주요업무별 수행 인원	25
5.3 기술적 보호조치	26
5.3.1 전자서명키 생성	25
5.3.2 키 크기 및 해쉬값	25
5.3.3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	25
5.3.4 전자서명생성키 삭제·파기 방법	25
5.3.5 전자서명생성키 사용기간	25
5.3.6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 통제	26

5.4 인적 보안	27
5.5 감사 기록	27
5.5.1 감사기록 대상사건의 종류	27
5.5.2 감사기록 검토 및 보호	27
5.5.3 사건 발생 통보	27
5.6 기록 보존	28
5.6.1 기록 보존 대상의 종류	28
5.6.2 보존기록 보호	28
5.7 장애 및 재해복구	28
5.7.1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	28
5.7.2 데이터의 훼손·멸실에 대한 대책	29
5.7.3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29
6. 공인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30
6.1 보증	30
6.1.1 보증 책임	30
6.1.2 면책	30
6.2 분쟁 해결	30
6.2.1 준거법	30
6.2.2 재판 관할	30
6.2.3 분쟁 조정	30
6.3 개인정보보호	31
6.4 감사 및 점검 등	31
6.4.1 보안 점검	31
6.4.2 보안업무규정 준수	31
6.5 관련법의 준수	31
6.6 공인인증업무준칙의 효력	32

1. 개 요

1.1 배경 및 목적

1.1.1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및 국가 전체의 공개키기반구조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법률 제5792호)이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1.2 공인인증업무준칙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의 공인인증업무준칙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인터넷진흥원의 공인인증업무준칙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 정책, 인증서 발급·관리, 보안통제, 기타 운영정책·절차 등 전자서명 인증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 등의 책임·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3 인터넷진흥원 소개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전자서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서 최상위인증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사회 정보화 촉진 및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1.1.3.1 인증업무 관련 연락처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에 관련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o URL : <http://www.rootca.or.kr>
- o 전자우편 : rootca@kisa.or.kr
- o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4층 한국인터넷진흥원
- o 전화 : (02)405-5411

1.1.3.2 인증업무 관련 정보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에 관련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o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준칙 : <http://www.rootca.or.kr/kor/down/cps15.pdf>
- o 공인인증기관 목록 : <http://www.rootca.or.kr/lca/lca.htm>
- o 공인인증서 목록 : <http://www.rootca.or.kr/cert.htm>
- o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 <http://www.rootca.or.kr/crl.htm>
- o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해쉬값 : <https://rootca.kisa.or.kr/kor/popup/potency.jsp>

1.2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명칭

본 문서의 명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이다.

1.3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1.3.1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

- o 국가 공개키기반구조 구축 운용에 관한 정책 심의
- o 국가간 상호인증체계 구축 방안 심의

1.3.2 국가정보원

- o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국가보안 정책 합치 여부 심의
- o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에 대한 보안지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대한 보안지도

1.3.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감독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있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업무조사
-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등

1.3.4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서 최상위인증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인증업무를 폐지한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 인수
-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 인수
-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지원
- 공인인증기관 검사 및 안전운영 지원
-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기타 전자서명 인증과 관련된 업무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등 인증업무 수행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발급
- 시점확인 서비스

인터넷진흥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4.1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고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 및 신뢰당사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 기타 인증업무 수행관련 정보 등

1.3.4.2 전자서명생성키 취약성에 대한 조치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포함하는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새로운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갱신 발급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며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키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취약성을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키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취약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1.3.4.3 전자서명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조치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급한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 및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며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1.3.5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한다. 다만 전자서명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신원확인
-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 공인인증서 갱신
-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 공고
- 시점확인 서비스 등

공인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3.5.1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고

공인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
-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등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및 신뢰당사자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지 또는 폐지
-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
 -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 기타 인증업무 수행관련 정보 등

1.3.5.2 전자서명생성키의 보호

공인인증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보안 모듈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가입자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전자서명생성키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메시지 인증코드(MAC)등의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이를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1.3.5.3 인증받은 전자서명생성키의 사용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사용하여야 한다.

1.3.5.4 전자서명생성키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통보하며 인증업무의 안

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1.3.5.5 전자서명생성키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통보하며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1.3.5.6 전자서명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통보하며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1.3.6 신뢰당사자

신뢰당사자는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인증서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
- 전자서명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외 인증기관
- 전자서명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외 인증기관의 가입자 등

신뢰당사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3.6.1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 이해

신뢰당사자는 이 인증업무준칙 '2.1.2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용목적에 이해해야 한다.

1.3.6.2 공인인증서의 확인

신뢰당사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진정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1.3.6.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확인

신뢰당사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전에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통하여 당해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확인하여야 한다.

1.4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관리

1.4.1 인증업무준칙 제·개정권자

이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권자는 인터넷진흥원의 원장이고 제·개정시에는 전자서명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1.4.2 개정 절차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6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한 경우에 이를 개정한다.

인터넷진흥원의 원장이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개정한다.

인터넷진흥원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개정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 공인인증업무준칙 버전
- 적용 업무 및 범위의 개요
-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개정 기록
 - 개정된 기존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규정
 -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등

1.4.3 시행 절차

인터넷진흥원은 제·개정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제·개정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이 공인인증업무준칙 ‘1.1.3.2 인증업무 관련 정보’에 공고하며 개별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게 통보한다.

제·개정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은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5 정의 및 약어

o DN(Distinguished Name)

인증서 발급자 및 인증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규격을 준수하는 이름 형식을 말한다.

o 가입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o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영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o 신뢰당사자

인터넷진흥원의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당해 인증서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o 신원확인

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효력정지 및 폐지 등의 신청시 공인인증기관, 신청인 및 신청 정보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o 실명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정하는 실질명의를 말한다.

o 인증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o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o 공인인증서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o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o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o 전자서명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전자서명검증키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생성키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키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 인증시스템

등록정보관리,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및 시점확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공인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2.1 공인인증서 종류

2.1.1 인증서 정책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에게 전자서명법 제15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정지하거나 폐지한다.

2.1.2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및 용도

인터넷진흥원이 자가서명하여 발급한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서는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검증키가 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가 공인인증기관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5조 제4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분	용도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가입자 공인인증서 발급
시점확인 공인인증서	시점확인 응답에 대한 전자서명
OCSP 공인인증서	OCSP 응답에 대한 전자서명

2.1.3 공인인증서 이용 제한

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발급 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한 용도에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공인인증서비스 수수료

2.2.1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갱신 발급 수수료

인터넷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갱신 발급을 신청하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2.2 공인인증서 접근 수수료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를 열람·확인하는 신뢰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2.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접근 수수료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접근하는 신뢰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2.4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터넷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공인인증업무

3.1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 및 양식을 전송받거나 직접 교부받아서 신청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후 인터넷진흥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해 인터넷진흥원으로 방문 시, PKCS#10 인증서 서명 요청(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 형식으로 공인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키를 생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3.1.1 명칭의 사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내의 기본영역에 사용되는 명칭은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을 준용한다.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내의 DN에는 기관명 또는 법인명을 사용한다.

3.1.2 공인인증서 발급 정보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
-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의 인터넷진흥원의 명칭
-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사항 등

3.1.3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5조 제5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한다.

- 인터넷진흥원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키길이	
	1024bit	2048bit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5년 이내	10년 이내
시점확인 공인인증서	3년 이내	10년 이내
OCSP 공인인증서	3년 이내	10년 이내

3.1.4 공인인증서 수령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수령 통보를 받은 후 인터넷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수령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수령한 후,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1.1.3.2 인증업무 관련 정보에 기술된 공인인증서 목록에 공고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수령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3.2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3.2.1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신원확인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이 제출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에 상응하는 서류를 통해 당해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을 직접 대면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법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신원확인 증표로 전자서명법제13조의2 신원확인방법에 따라 성명 및 주민번호 확인
-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이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원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기관 혹은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지녔는지 혹은 신청대리인이 신청인의 대리권한을 지녔는지 여부를 확인

3.2.2 신규발급 절차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기 전에 다음의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 공인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전자서명검증키의 유일성 확인
- 공인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전자서명검증키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이 소유한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확인
- 공인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DN의 유일성 확인

3.3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3.3.1 갱신발급 신청 시 신원확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갱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신규 발급 신청에 준하는 절차로 신원을 확인한다.

3.3.2 갱신발급 절차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갱신시점 30일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의 갱신발급 요청을 공인인증기관에게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린다.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 갱신시점은 통상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3개월 전 시점으로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를 갱신 발급하기 전에 다음의 공인인증서 갱신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갱신 발급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은 동일한 전자서명생성키로 공인인증서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 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전자서명검증키의 유일성 확인
- 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DN과 이전 인증서에 기재된 DN 동일성 확인

3.4 공인인증서 재발급

3.4.1 재발급 신청 시 신원확인

공인인증기관이 자신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신규 발급 신청에 준하는 절차로 신원을 확인한다.

3.4.2 재발급 절차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기 전에 다음의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다.

- 공인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새로운 전자서명검증키의 유일성 확인
- 공인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새로운 전자서명검증키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이 소유한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확인
- 공인인증서 신청인이 제출한 DN의 유일성 또는 동일성 확인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해당사항 없음

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폐지

3.6.1 효력정지·효력회복, 폐지 신청 시 신원확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신규 발급 신청에 준하는 절차로 신원을 확인한다.

단, 공인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3.6.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3.6.2.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사유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7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효력정지를 신청한 경우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효력을 정지한다.

3.6.2.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신청인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3.6.2.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신청서 제출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효력정지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터넷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서명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3.6.2.4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갱신 및 공고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인인증서에 대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발급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갱신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3.6.3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3.6.3.1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인

공인인증기관은 효력이 정지된 자신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3.6.3.2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신청서 제출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터넷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3.6.3.3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공고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사실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3.6.3.4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기간의 제한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제17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3.6.4 공인인증서 폐지

3.6.4.1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4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

-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공인인증기관이 사기나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공인인증기관의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6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이 인증업무준칙 ‘1.3.4.3 전자서명생성키 취약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키에 대한 취약성을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이 인증업무준칙 ‘1.3.4.4 전자서명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

3.6.4.2 공인인증서 폐지 신청인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3.6.4.3 공인인증서 폐지신청서 제출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폐지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후 인터넷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3.6.4.4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갱신 및 공고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인인증서에 대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발급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갱신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

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3.6.4.5 공인인증서 폐지 유예기간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폐지 처리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며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의 정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인증서를 폐지한다.

3.7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해당사항 없음

3.8 기타 부가 서비스

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 시점확인서비스 등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9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프로파일은 X.509 버전3 공인인증서의 규격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인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규격」을 준수한다.

3.10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프로파일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의 프로파일은 X.509 버전2 공인인증서폐지목록의 규격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인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규격」을 준수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장영역 중 폐지사유코드 필드를 이용하여 당해 인증서가 효력정지되었음을 나타낸다.

3.1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해당사항 없음

3.12 전자서명키 갱신

인터넷진흥원은 자신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전자서명키를 생성하여 인증서 갱신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13 공인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해당사항 없음

3.14 공인인증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해당사항 없음

4.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4.1 공고설비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4.2 공고방법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매주 1회 갱신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4.3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정보 공고

인터넷진흥원은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인 「공인인증기관 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에 따라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거나,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가입자 또는 신뢰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또는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의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의 해쉬값을 공고한다.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매주 1회 갱신한 후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한다.

5. 공인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5.1 물리적 보호조치

5.1.1 물리적 접근 통제

인터넷진흥원은 외부인의 침입이나 불법적 접근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인증시스템 등이 설치된 장소를 보호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시스템을 별도의 통제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물리적 접근통제를 위하여 보안캐비닛 내에 설치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상 상황 발생시 경보 기능을 갖는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시스템과 침입감지 시스템 등 감시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인터넷진흥원의 출입통제 시스템은 신원확인카드, 지문인식 및 무게감지 장치 등을 다중으로 결합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인터넷진흥원은 보안경비요원을 배치하여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다.

5.1.2 전원 및 공기조절시스템

인터넷진흥원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절시스템을 설치한다.

5.1.3 수해 방지

인터넷진흥원은 침수로부터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한다.

5.1.4 화재 예방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시스템실 등에 화재 탐지기, 휴대용 소화기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다.

5.1.5 매체 저장

인터넷진흥원은 주요 저장·기록매체를 금고에 저장하여 물리적으로 접근을 통제한다.

5.1.6 폐기물 처리

인터넷진흥원은 문서, 디스켓 등을 폐기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파기한다.

5.1.7 원격지 백업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을 물리적으로 격리된 원격지에 백업하여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간 보관한다.

5.2 절차적 보호조치

5.2.1 역할별 업무 분리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를 역할별로 분리하여 수행한다.

5.2.2 주요업무별 수행 인원

키 생성 업무는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타 인증업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5.3 기술적 보호조치

5.3.1 전자서명키 생성

인터넷진흥원은 인가된 자만이 전자서명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키 생성시 3명 이상의 다중 통제 아래 생성된다.

인터넷진흥원은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지 않고 물리적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키 생성시스템 또는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보안 모듈에서 전자서명키를 생성한다.

5.3.2 키 크기 및 해쉬값

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크기의 키 및 해쉬값을 이용한다.

- KCDSA 및 RSA 경우 : 2,048 비트 이상
- ECDSA 경우 : 163 비트 이상
- HAS-160 및 SHA-1 경우 : 160 비트 이상
- SHA-2 경우 : 224 비트 이상

5.3.3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시설 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 및 FIPS-140-2 레벨 3을 만족하는 보안 모듈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키는 2명 이상의 운영자에 의한 다중 통제 아래 이용된다.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생성키의 훼손에 대비하여 전자서명생성키를 백업하며 서초청사 전자서명인증관리 백업센터에 보관한다.

5.3.4 전자서명생성키 삭제·파기 방법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자서명생성키가 훼손·유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전자서명생성키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거나,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에 따라 전자서명생성키를 삭제한다.

5.3.5 전자서명생성키 사용기간

인터넷진흥원 및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키는 해당 공인인증서가 유효한 동안 사용할 수 있다.

5.3.6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 통제

인터넷진흥원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침입탐지시스템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한다.

5.4 인적 보안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 중 인증관리센터장과 보안관리자는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5.5 감사 기록

5.5.1 감사기록 대상사건의 종류

인터넷진흥원은 등록정보관리,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및 시점확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하 “인증시스템”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한다.

5.5.2 감사기록 검토 및 보호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 내부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을 감사관리자로 정하며, 감사관리자는 감사기록을 검토하고 보존한다.

각 시스템의 감사기록은 감사관리자에 의해 총괄 관리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

5.5.3 사건 발생 통보

보안위반사건 발생시 담당업무관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5.6 기록 보존

5.6.1 기록 보존 대상의 종류

인터넷진흥원은 다음의 업무와 관련된 내역을 기록 보존한다.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인증 업무
- 인터넷진흥원 핵심인증시스템 등의 운영 업무

5.6.2 보존기록 보호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 내부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을 문서관리자로 정하며, 문서관리자는 모든 보존기록을 관리하며 기타 관리자들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의 보존기록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은 보존기록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존기록을 보호한다.

- 전자문서는 전자서명하여 안전하게 보관
-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에 보관

5.7 장애 및 재해복구

5.7.1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

인터넷진흥원은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중으로 설치한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5.7.2 데이터의 훼손·멸실에 대한 대책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등의 주요 데이터에 훼손·멸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록 보존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5.7.3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발급/갱신/폐지 등 공인인증 관리 업무, 전자서명키 등 관리업무, 공인인증기관 심사 및 점검 업무와 전자서명 인증기술 등 핵심/주요 업무가 정보자산 및 설비자산 장애, 테러, 정전, 지진, 화재, 풍수해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한다.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활동 방법을 제시하여, 인증관리센터 운영 업무와 전자서명인증관리 핵심업무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 10km 이상 떨어진 백업센터를 통해 정상 업무로의 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정보자산 인프라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중단으로 인한 운영상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6. 공인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6.1 보증

6.1.1 보증 책임

인터넷진흥원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증한다.

-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6.1.2 면책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인증업무준칙의 각 규정에 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해 또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2 분쟁 해결

6.2.1 준거법

이 인증업무준칙은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된다.

6.2.2 재판 관할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뢰당사자와의 인증업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6.2.3 분쟁 조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뢰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자서명법 및 인증업무준칙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6.3 개인정보보호

최상위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최상위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신청한 공인인증기관의 신청 및 관련 기록은 기밀로 유지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에 발급한 인증서, 인증서 폐지 등 상태 정보, 최상위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고하는 정보는 기밀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6.4 감사 및 점검 등

6.4.1 보안 점검

인터넷진흥원은 인증관리센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시스템 변경시 국가정보원에 보안지도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진흥원은 매년 1회 이상 웹트러스트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감사(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규정)를 수행하고,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한다.

6.4.2 보안업무규정 준수

인터넷진흥원은 인증관리센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인증업무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보안관리지침」을 준용한다.

6.5 관련법의 준수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하여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인증업무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귀속된다.

- 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인터넷진흥원의 공인인증업무준칙
- 인터넷진흥원의 명칭
 - 법인명
 - 인터넷 도메인명
- 인터넷진흥원이 생성한 전자서명키 등

6.6 공인인증업무준칙의 효력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은 1.6버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